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3-14호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2일

강릉시 의회의장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강릉시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 의원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4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번호: 033-640-4077
- 팩스번호: 033-640-4070
- 전자우편(이메일): hellen8762@korea.kr

붙임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② (생략)</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의 구성 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은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u><신설></u></p> <p>④ ~ ⑪ (생략)</p>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u></p> <p>④ ~ ⑪ (현행과 같음)</p>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법규명: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